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궤도운송사고 보고의무 위반 제재 강화 및
의무보험 제도개선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98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임 종 수

목 차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07698)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운송사고 보고의무 미 이행 시 허가·승인 취소 등 (안 제12조제1항제14호의2, 제34조제1항)	3
2. 보험 계약체결 거부 금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권 압류 금지 (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제2항)	11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0769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1. 22.
3. 회 부 일 : 2025.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로 하여금 운송 중 기계의 결함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고 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전용궤도운영자의 경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운행중단 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대한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와 전용궤도운영자가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에 대한 관할관청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사업의 허가나 승인을 취소 또는 궤도사업 경영 등을 정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고의무 미이행 시 과

태료 처분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대한 보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4호의2).

한편, 현행법은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재난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궤도 운행의 특성상 궤도운송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고 매년 안전검사를 통해 안정성이 검증되고 있고 보험회사가 궤도운송사고 관련하여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현재까지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체결 거부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궤도운송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향후 궤도운송사고 발생 위험이 커져 보험 계약체결 거부 및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궤도운송사고 관련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체결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토록 하여 궤도운송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Ⅲ. 검토의견

1. 운송사고 보고의무 미 이행 시 허가·승인 취소 등

(안 제12조제1항제14호의2, 제34조제1항)

현행법 제25조제1항¹⁾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즉시 시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개정안은 궤도운송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허가·승인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1) 「궤도운송법」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통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생략) <신설> 7. (생략) ③ (생략)	②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²⁾에서 보고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는 ①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사고, ② 궤도차량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사고, ③ 운송 중 기계의 결함·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 궤도차량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사고
3.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운행이 중단된 사고로서 궤도운송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의미함. 최근 5개년(2020년~2024년)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 보고는 28건임.

【 궤도운송 사고 현황(2020년~2024년)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차량 추락	-	-	-	-	-	-
차량 충돌	1	2	1	-	-	4
차량 화재	-	-	-	-	1	1
인명 피해	-	-	-	3	2	5
기 타	-	8	6	2	2	18
합 계	1	10	7	5	5	28

※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런데, 일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의 경우 궤도운행 중단 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보고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³⁾이 제기된 바 있고,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지연 보고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⁴⁾

3) 일부 언론에서 휘닉스파크가 운행사고 시각을 축소하여 보고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채널A, 「[단독]휘닉스파크, 두 달 만에 곤돌라 또 멈춰…사고 감추려 축소 보고 의혹」, 2024.10.16.),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평창 휘닉스파크 곤돌라 운행중단 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원인 및 보고 의무 등 위법성 여부 파악 및 유사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 포함되었음.

4) 서울특별시 중구청 단속 사례 (2019. 8. 13.)

보고의무사항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의 유형으로 볼 때, 궤도운송의 지속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중요 사안인 점, 보고의무 위반 시 안전성 점검을 위한 후속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⁵⁾, 과태료를 높여 보고의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궤도운송 안전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것임.

다만,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태료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현행법의 다른 의무위반 규정 및 「철도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사례에 비추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관련 참고사례 】

법 률	부과 대상	과태료 상한
개정안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 의무 위반	200만원→500만원
궤도운송법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궤도사업 변경신고 없이 허가받은 사항 변경	200만원
	전용궤도 변경신고 없이 승인·신고사항 변경	200만원
	궤도사업 등 위탁 미신고	200만원
	궤도운영 휴지 기간 상한(1년)을 초과	200만원
	궤도사고 피해보상 보험 가입의무 위반	200만원
철도안전법 ⁶⁾	(사상자 많은 사고) 철도사고 발생 보고의무 위반	1,000만원
	(그 외 사고) 철도사고 발생 보고의무 위반	5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⁷⁾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의무 위반	500만원

5) 이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보고를 받은 시장 등(시장 등으로부터 사고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포함)은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보고의무 위반 시 상향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허가 승인의 취소·정지 처분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처분 간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하여 이 법 내 다른 과태료 부과 대상과 다른 법률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면허 등의 취소·정지가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중복적 제재처분을 합리화하려는 취지로 면허 등의 취소·정지 대상에서 해당 사유를 삭제한 바 있음.⁸⁾

6)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복(顛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8) 2012. 8. 2. 시행, 법률 제1129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취소·정지 중복적용 관련 참고사례9) 】

법 률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상한	영업 취소·정지
궤도운송법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X
	궤도사업 변경신고 없이 허가받은 사항 변경	200만원	X
	전용궤도 변경신고 없이 승인·신고사항 변경	200만원	X
	궤도사업 등 위탁 미 신고	200만원	X
	궤도운영 휴지 기간 상한(1년)을 초과	200만원	X
	궤도사고 피해보상 보험 가입의무 위반	200만원	X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임·요금 미 신고	1,000만원	O
	운송사업 상속 신고 미 신고	1,000만원	X
	운송수입금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1,000만원	O*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미보장	1,000만원	O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미확인	1,000만원	O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 운행하도록 함	1,000만원	O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 체결 시 운임, 요금을 미고지	1,000만원	O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사업 등록 없이 요금을 받거나 또는 요금신고 없이 요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X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 어린이에게 운임을 받은 경우	500만원	O
	사업용 자동차 미표시	500만원	O**
	교통사고 시 조치 및 보고의무 위반	500만원	X
	운수종사자 취업현황 고지의무 위반	500만원	X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고지의무 위반	500만원	X
	행정기관의 사업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위반	500만원	O**
	행정기관의 검사·질문에 불응·방해·기피	500만원	O
	좌석안전띠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50만원	X
	운수종사자에게 여객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미 실시	50만원	X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안전정보 제공의무 위반	50만원	X

* 운송수입금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사업자, 운영자 대상 과태료가 아닌 경우 제외

9) 철도안전법은 해당 법률에 철도사업에 대한 허가·승인의 취소, 영업정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철도사업법」 제16조(면허취소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데, 「철도안전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이 해당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사고 보고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는 동의하나, 사업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은 과태료 처분과 병과되어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보험 계약체결 거부 및 보험금 지급청구권 압류 금지 (안 제26조 등)

현행법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개정안은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가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업자가 특정한 경우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 가입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궤도시설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
제34조(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u>케도사업자 또는 전용케도운영자</u>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u>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③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u>케도운송사고등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u>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u>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u>케도사업자 또는 전용케도운영자</u>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26조에 규정된 궤도사고 피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궤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운송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 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경우 또는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이 양도·압류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사고 피해자 구제가 미흡해질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 거부를 금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¹⁰⁾함으로써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한 피해자 구제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됨.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¹¹⁾은 법률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10) 유사 입법례에서 압류만 금지하는 경우(주차장법), 압류와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압류·양도·담보 제공 모두를 금지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로 사례가 나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모두를 금지하는 것이 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것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해서 이를 규정하는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을 선언하고 있음.

참고로, 2024년 8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운송사업자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보험 가입·갱신 확인 및 점검 체계¹²⁾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다만, 보험 가입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천만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1천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00만원) 등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마다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운송사고 책임보험의 성격, 유사 입법례에 규정된 의무보험의 성격과 과태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2) 국토교통부는 해당 권고에 대해서 현행법 제26조의2(제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보험가입 정보가 입력·확인·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 2024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 평가결과 】

□ [권고 내용] 법령상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규정

불충족 항목	권고 보험수	권 고 사 항
◆ 보험 가입·갱신 확인 및 점검 체계	6건 (기부식품등 취식사 용피해 손해보험 등)	· 가입의무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 보험 증서 확인,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시스템 운영 등
◆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39건 (연구실 안전공제 등)	·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등	46건 (운전학원 종합보험 등)	· 사고피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마련

- ❖ 아래 표 내용 중 제도개선 권고항목은 보험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번호*로 표시한 것임
* ① 보상한도, ② 보험 가입·갱신 확인 및 점검 체계, ③ 미가입자 제재 체계, ④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⑤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 ※ '23년 불수용 보험 항목, '22년~'23년 권고 수용보험 중 미완료 항목, '24년 신규 보험 중 미흡 항목을 표기함

○ 세부 종합 평가결과

연번	기관	부서	보 험 명	등급	제도개선 권고항목
6	국토부 (7건)	철도시설안전과	궤도운송사업자 배상 책임보험	나	②④⑤

※ 자료 : 행정안전부

나. 국토교통부 의견

궤도운송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거부 금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75